

Q1. 우편물로 해외 가족에게 보내는 마스크가 왜 수출금지 대상인가요?

- 「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수급조정조치」 제5조(수출금지) 개정('20.3.6.)에 따라 보건용 및 수술용 마스크는 2020. 3. 6.부터 수출금지 대상에 해당됩니다.
 - *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, 「물가안정에 관한 법률」 관련
- “법령에 따라 수출이 제한되거나 금지되는 물품”은 「관세법」 제258조(우편물통관에 대한 결정) 제2항에 따라 정식 수출신고 및 통관 절차를 거치지 않고는 우편물로 발송하실 수 없습니다.
 - 즉, 보건용 및 수술용 마스크는 수출금지 대상물품에 해당되므로 수출금지 예외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가 아니면 수출할 수 없습니다.

Q2. 마스크 수출금지 예외인정 기준을 별도로 마련한 이유는 무엇인가요?

- 마스크 수출금지 이후 해외거주 유학생, 주재원 등의 안전을 위한 마스크 발송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여, 이를 해소키 위해 우리청에서 인도적 목적으로 해외거주 가족용 마스크의 해외발송을 관계기관협의회에 건의하여 마련한 것입니다.
- 마스크 수출금지 예외허용에 있어 개인의 경우 수출금지 예외 사전승인(산업통상자원부 협의, 식품의약품안전처 사전승인 등) 등 수출절차 이행이 사실상 곤란하고, 정식 수출신고 시 사전준비(개인통관고유부호, 신고인부호 발급) 및 수출신고서 작성에 장시간 소요되는 등 불편함이 있어
 -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, 국제우편물 접수시 발송인과 수취인의 가족관계 등 우체국에서 간편확인 절차를 거쳐 국제우편물로 발송될 수 있도록 조치한 것입니다.

Q3. 모든 마스크가 수출금지 된 것인가요?

- 아닙니다. 보건용 및 수술용 마스크만 수출금지에 해당됩니다.
- 따라서, 일반 마스크(면마스크 등)는 수량에 상관없이 우편물로 발송하실 수 있습니다.
- ※ 다만, 향후 관련 법령 등 개정시 달리 적용될 수 있음

Q4. 가족의 인정범위 및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무엇인가요?

- 발송인 본인의 배우자, 발송인의 직계존비속에 한하여 가족으로 인정됩니다.
- 발송인과 수취인의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(예시, 주민등록등본, 가족관계증명서 등)와 본인 신분증(주민등록번호 확인)을 지참하시어 우체국 접수창구에서 확인받으시면 됩니다.

Q5. 조부모(또는 외조부모)가 손주에게 마스크를 보낼 수 있나요?

- 네, 가능합니다. 손주는 (외)조부모의 직계비속임으로 마스크를 보낼 수 있습니다.

Q6. 직계존비속, 배우자에게는 보낼수 있는데, 사위, 며느리에게도 보낼 수 있는가요?

- 아니요, 보낼 수 없습니다.
- 사위, 며느리, 형제자매는 직계존비속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.

Q7. 할아버지를 대신하여 삼촌이 조카에게 우편물 접수가 가능한가요?

- 네, 접수할 수 있습니다.
- 이 경우 할아버지와 삼촌, 손주(삼촌의 조카)의 가족관계 확인할 수 있는 서류(예시, 주민등록등본, 가족관계증명서 등)와 삼촌의 신분증(주민등록번호 확인)을 지참하시어 우체국 접수창구에서 확인받으시면 됩니다. (발송인은 할아버지, 수취인은 손주입니다.)

Q8. 외국인은 이번 수출금지 예외 인정기준을 적용받을 수 없나요?

- 네,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.
- 재외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하여 예외적으로 허용한 것으로 외국인은 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.

Q9. 마스크 예외 인정기준 수량이 월 8장 이내로 제한된 이유는 무엇인가요?

- 현재 국민 개인이 구매할 수 있는 공적마스크 수량이 주당 2매임을 감안하여 월 8장으로 한정하였습니다.

Q10. 예외 인정기준 수량을 초과하여 우편물로 발송된 경우 어떻게 되나요?

- 해외로 발송되기 전에 세관검사과정에서 수량 초과가 확인되는 경우 접수우체국으로 반송 조치되며, 이 경우 우편요금은 반환되지 않습니다.
- 또한, 고의성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령에 따라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.

Q11. 아빠, 엄마가 해외 유학중인 딸에게 각각 8장씩 총 16장을 보낼 수 있나요?

- 아니오, 보낼 수 없습니다.
- 마스크 예외 인정기준은 수취인 기준이며, 아빠, 엄마가 딸에게 각각 보낼 경우 제한수량인 8장을 초과하게 됨으로 보낼 수 없습니다.

Q12. 아빠가 해외 유학중인 두 자녀에게 각각 8장씩 총 16장을 보낼 수 있나요?

- 예, 보낼 수 있습니다.
- 마스크 예외 인정기준은 수취인 기준이므로 각 자녀별로 제한수량인 8장을 초과하지 않음으로 보낼 수 있습니다.

Q13. 해외 마스크 발송시 발송시점기준 월 8매 인지, 월별 8매 인지 월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.

- 최초 우편물 발송(우체국 접수일)로부터 4주가 지나면 다시 보내실 수 있습니다.

Q14. 마스크와 다른 물품을 함께 박스에 담아 포장할 수 있나요?

- 아니오, 같이 포장할 수 없습니다.
- 우편물 접수과정에서 불필요한 민원마찰을 최소화하고 개장검사 없이 신속한 우편물 발송을 위해 수량과 중량을 부득이하게 제한하게 된 것입니다.

Q15. 해외 가족이 같은 집에 거주하고 있을 경우 묶음 발송은 가능한가요?

- 네, 인터넷 사전접수 시 각 수취인 정보를 모두 기재하고, 우체국 접수 시 수량과 가족관계 등이 확인될 경우에는 가능합니다.
- 우편물 접수 이후 세관검사과정에서 가족관계 증빙서류 제출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(세관검사 등으로 발송이 다소 지연될 수 있음).

※ [묶음 배송] 우체국 인터넷(스마트) 사전접수 요령(예시)

▶ ‘수취인’ 란은 대표 수취인(1인) 기재,

▶ ‘내용·품명’ 란에 대표 수취인 포함 가족명 각 기재

* (예) 미국에 거주중인 배우자, 자녀 2명에게 각 마스크 8매를 발송시(24매 단일 박스 포장),

대표 수취인은 ‘홍일동’,

1란 품명 ‘Family Mask(홍일동), 수량 : 8

2란 품명 ‘Family Mask(홍이동), 수량 : 8

3란 품명 ‘Family Mask(홍삼동), 수량 : 8으로 기재하여 인터넷 사전접수